

▶ **이용계약에 관한 사항**

1 계약기간

- 가. 복지용구의 대여계약기간은 수급자의 노인장기인증 유효기간과는 별도로, 일반적으로 1년간 연간 한도액 160만원이 다시 생성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.
- 나.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‘복지용구 급여확인서’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한 제품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편의에 따라 사용되,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내에 대여가 가능하고,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구매의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이용이 가능하다. 연한도액 적용기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, 미끄럼방지매트 및 자세변환용구는 각각 5개, 간이변기 2개, 안전손잡이 10개,,요실금팬티 4개, 경사로 6개 이상은 판매할 수 없다.
- 다.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(계약변경)을 원칙으로 한다

2 계약목적

- 가.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구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나.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

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- 가. 본인부담금 -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일반대상자의 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로 한다 (단,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·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%는 6%, 건강보험료 순위 25~50%는 9%,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 면제)

일반대상자	감경		타법령 의료급여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
	보험료순위 25%이하	보험료 순위 25%~50%		
15%	6%	9%	6%	면제

- 1) 복지용구 구입가격 및 대여가격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서 정한 가격으로 산정한다.
- 2)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,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.
- 3)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,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.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일로 산정할 수 있다.
- 4) 복지용구 가격은 배송비, 설치·철거비,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,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.

- 5)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.
- 6)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.

나. 급여연간한도액

- 1)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.
- 2) 연 한도액(공단부담금+본인부담금)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(이하 "유효기간"이라 한다)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. 다만,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.
- 3)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.

다. 급여기준

- 1) 수급자는 급여품목 중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, 사업소는 당해 품목만을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- 2)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바코드가 공단에 등록된 각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제품별 사용 가능 횟수(이하 "사용 가능 횟수"이라 한다) 이내의 제품만을 대여할 수 있다.
- 3) 사용 가능 횟수가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 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은 사용 가능 횟수의 1/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다.
- 4) 수급자의 복지용구 구입·대여 방법
 - 사용 가능 횟수가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· 형태 ·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용 가능 횟수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. 단,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.
 -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다.
 - 구입 또는 대여품목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다. 다만, 경사로(실내용)는 구입, 경사로(실외용)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(실내용, 실외용)는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.
 -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.
 - 연한도액 적용기간중 안전손잡이는 10개, 미끄럼방지양말은 6켢레, 미끄럼방지매트·미끄럼방지액은 5개, 간이변기(간이대변기·간이소변기)는 2개, 자세변환용구는 5개, 요실금팬티는 4개, 경사로(실내용)는 6개를 구입한도로 한다.
- 5) 수급자가 구입한 제품이 사용 가능 횟수 기간 중 훼손 · 마모 및 신체상태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, 수급자가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,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횟수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.
- 6)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· 수동침대 · 이동욕조 ·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.
- 7)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.
- 8) 사업소는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한 복지용구에 대해서만 대여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
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(이하 ‘보호자’에 포함)을 지정하여야 하며,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가.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1)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
- 2)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- 3) 사업소의 만족도조사, 방문상담 등의 서비스 질 향상 노력에 대해 평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나.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1) 수급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사업소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
- 2)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
- 3)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

5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

가. 계약의 해제

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장기요양보호대상 등급 인정을 받으신 수급자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.

단,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병원에 입소할 시에는 그 시점부터 계약을 해제하고 급여를 중단한다.

나. 이용료 등 수납 -복지용구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 월 이용료는 매월 지정한 날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.

다.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-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.

▣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
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
가.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

- 1)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- 2)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- 3)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

나.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(보호자)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